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478
------------	-----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기간(2021. 1. 1. ~ 2025.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노인일자리법」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추진 필요성

-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의 규모 또한 매년 확대되고 있는 만큼, 노인 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고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위탁 범위: 평창시니어클럽 운영 및 관리 전반

라. 위탁시설 개요

- 평창시니어클럽

- 소재지: 평창군 진부면 진부새싹길 21 (2층)
- 규모: 265m²(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사업장)

※ 전문인력 25명, 참여자 2,159명

- 사업현황

사업유형	사업명	일자리 수	비고
	계	2,159	
노인 공익활동 사업 (7)	소계	1,5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5세 이상 - 월 급여 29만원 - 월 30시간 활동
	공공의료관리사업	38	
	배움터가꾸기사업	99	
	남부근린시설관리사업	300	
	북부근린시설관리사업	300	
	북부내고장정화사업	345	
	남부내고장정화사업	345	
	지역문화재관리지원	166	
공동체 사업단 (10)	소계	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0세 이상 - 근로계약 상 급여 -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오대산문화사업단	12	
	오대산유통사업단	10	
	청춘카페(평창점)	10	
	청춘떡방사업단	12	
	지르메마을사업단	20	
	오대산영농사업단	65	
	평창영농사업단	85	
	청춘보리밥(대관령점)	16	
	청춘보리밥(봉평점)	16	
	청춘보리밥(진부점)	20	
	소계	273	
노인 역량활용 사업 (9)	아이사랑사업단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60세 이상 - 월 급여 63만원 (수당 미포함) - 월 60시간 활동
	늘봄학교지원사업단	30	
	다함께돌봄사업단	20	
	경로당관리매니저	77	
	평창공공이불빨래방	40	
	시니어푸드뱅크매니저	12	
	시니어금융업무지원사업	6	
	파크골프러닝메이트	18	
	시니어탐방플러스	40	
	소계	27	
취업알선형 (1)	취업알선형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처로 연계

마. 민간위탁기간

- 5년(2026. 1. 1. ~ 2030.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기존 수탁자의 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사 실시
-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선정
- 심사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공모 절차 진행

○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선정기준

- 직전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실적
-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의 구체성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해당없음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다른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전담인력 채용, 프로그램 구성, 신규사업 발굴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참여자 모집, 선발, 관리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가능

-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오랜 기간 축적된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노하우를 활용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을 빨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성과 측정의 용이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
 - 기존에 수행했던 사업과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사업의 독립성·중복성 여부 판단 및 성과 측정에 용이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 감독 및 점검을 통하여 기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자.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추진현황(경과)
 - 2010. 12. 평창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강원도)
 - 2010. 12. ~ 2015. 2. (사)월정사복지재단 운영법인 지정(강원도)
 - 2015. 3. ~ 2020. 12. (사)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법인 변경 지정
 - 2021. 1. ~ 2025. 12. (사)평창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위탁(5년)

관계법령 발췌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단체 등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실적(직전년도 사업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의 운영 실적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할 인력 및 조직 현황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계획의 구체성

③ 제1항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사무, 위탁조건 등을 위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